

영등포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강북희 의원 발의】



2017. 9. 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62호로 2017년 8월 24일 강북회 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카 바이러스, 땡기열 등 신종 감염병 예방활동에 대한 구민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맞추어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소독 의무, 소독 실시 권고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 (안 제5조)

라.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설지원 (안 제6조 ~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 증가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건 안전을 위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활동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와, 소독 실시 권고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감염병 치료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 민간의료인력에 대한 소요 경비지원과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인해,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지카 바이러스 등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효율적 예방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참 고 자 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